

교직원 보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대학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초임금 책정)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초임은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참고하여 호봉을 책정하되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2019.8.21.개정)

② 직원의 초임은 개인의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감안하여 초임금을 책정한다. (2017.2.17.개정)

제4조(보수 지급일) 보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보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2021.11.03.개정)

제5조(승급) (2024.03.29.삭제)

제6조(승급일) (2024.03.29.삭제)

제7조(보수 계산) ① 보수는 임명 또는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의 임용 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봉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020.2.25.개정),(2024.03.29.개정)

②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시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분할 지급한다. (2020.2.25.신설)

제8조(겸직 보수) 교직원이 본직 이외에 타직을 겸할 때에 겸직에 대한 보수를 보직수당의 100% 지급한다. 다만, 겸직에 대한 수당은 최대 2개의 보직에 대하여 지급한다. (2019.12.12.개정)

제9조(휴직기간의 보수) ① 정관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본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정관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6호, 7호, 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전임교원의 초과수당 및 시간강사료) 전임교원에 대한 초과수당 및 시간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1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자는 그 결근일수가 당해 교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12조(특호봉) 삭제 (2024.02.24.)

제13조(임시직원의 급여) 임시직원의 급여는 업무의 난이도와 특수성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14조(상여수당) 삭제 (2024.02.24.)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시간외 근무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2013.4.15.개정)

제16조(숙직수당) 삭제 (2024.02.24.)

제17조(기타 수당) ①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명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월 본봉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삭제) (2011.9.30.개정), (2013.9.27.개정), (2017.12.11.개정), (2017.12.22.개정)(2021.1.25.개정)

③ 입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019.11.14.개정)

④ 외부 기관의 시설 대여와 관련하여 관리업무를 진행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4.03.29.신설)

⑤ 학내에 거주하는 직원이 생활관 또는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7.)

제17조의2(성과급) ① 고과평가 혹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2021.1.25.신설)

②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 업적평가 등이 우수한 교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021.1.25.신설)

제18조(교통보조비) 삭제 (2024.02.24.)

제19조(정근수당) 삭제 (2024.02.24.)

제20조(장기근속수당) 삭제 (2024.02.24.)

제21조(업무수당) 교직원에게 “별표 6”에 해당하는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2011.9.30.), (2012.2.16.개정)

제22조(경리수당) 금전출납을 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6”에 해당하는 경리수당을 지급한다. (2012.2.16.개정)

제23조 삭제 (2005.2.17.)

제24조(가족수당) 삭제 (2024.02.24.)

제25조 삭제 (2020.2.5.)

제26조 삭제 (2013.4.15.)

제27조 삭제 (2013.4.15.)

제28조(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016.12.30.개정)

제29조(가계지원비) 삭제 (2024.02.24.)

제30조(보직수당) 보직 교직원에게는 직책별로 “별표 6”에 해당하는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2014.5.14.개정), (2023.03.15.개정)

제31조(학생지도비) 삭제 (2024.02.24.)

제32조(효도수당) 삭제 (2024.02.24.)

제33조(경조금 지급) 교직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시 축하 및 위로금을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4조(육아휴직수당) 삭제 (2012.2.16.)

제35조(업무추진수당) 삭제 (2024.02.24.)

3-5-2 교직원 보수 규정

제36조(가계보전수당) 삭제 (2024.02.24.)

제37조(연구수당) 전임교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의 경우 총장의 승인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2020.2.13. 개정)

[본조신설 2012.2.16.]

제37조의2(프로젝트 수행 연구수당) 프로젝트 수행에 한해 <별표 9>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8.31.]

제37조의3(입시 수당) 입시면접을 지원한 교직원에게는 입시 수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제37조의4(대학기관평가인증 면접수당) 대학기관평가인증 면접을 진행한 교직원에게는 면접 수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제37조의5(사회복지학전공 졸업고사 출제·채점수당) 사회복지학전공 졸업고사 출제·채점한 교수에게 과목당 15,000원의 출제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38조(모니터링 진행 수당) 모니터링 진행 위원장 및 위원에게 <별표 11>에 해당하는 진행 수당을 지급한다. (2018.9.10.신설)

제39조(교직원 대학원 지원금) 직원 중 교육학 및 상담심리, 통계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시 총장의 결재 후 해당 대학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2018.12.12.개정)

제40조(용어의 정의) 보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8.9.10. 개정), (2018.12.12.개정)

- ① 보수 : 월 보수 및 기타 일체의 급여를 말한다.
- ② 봉급 : 직급별·호봉별로 매월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가. 교원: 본봉, 연구수당
나. 직원: 본봉, 업무수당
- ③ 수당 : 봉급 외에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2.17.]

제41조(연봉제) 삭제 (2024.02.24.)

제42조(국내출장비 및 교육훈련 출장비) 국내출장 및 교육훈련 출장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별표 12>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2019.1.16.신설)

제43조(대학혁신지원TF팀 성과 수당) 대학혁신지원사업 진행을 위하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에 대학혁신지원TF팀에 <별표 13>에 따라 성과 수당을 지급한다. (2019.1.16.신설)

제44조(육아휴직급여) 직원이 육아휴직을 진행하였을 때는 고용보험 제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2019.5.27.신설),(2019.07.23.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본교에 근무하는 자의 교직원 호봉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봉급표의 적용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5-2 교직원 보수 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보직수당 적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5-2 교직원 보수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2025.02.24.)

3-5-2 교직원 보수 규정

<별표 2> 삭제(2025.02.24.)

<별표 3> 삭제 (2012.2.16.)

3-5-2 교직원 보수 규정

<별표 4> 삭제(2025.02.24.)

<별표 5> 삭제(2025.02.24.)

3-5-2 교직원 보수 규정

<별표 6> (개정 2014.5.14., 2014.9.5., 2015.8.24., 2016.3.14., 2017.2.17., 2017.6.9., 2017.8.31.개정,, 2017.11.20., 2018.8.24., 2019.1.16., 2019.10.11., 2019.11.14., 2019.12.31., 2020.1.30., 2020.2.5., 2020.3.25., 2020.4.28., 2020.9.18., 2023.03.15., 2024.03.29., 2024.05.27., 2025.02.24., 2025.12.02.)

적용범위	수당내역	지급액	
교직원	보직수당	총 장	1,000,000원
		대학원장	600,000원
		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500,000원
		원장, 관장, 학부장	300,000원
		전공주임교수, 산학협력단장, 센터장, 보건실장, 생활관장, 총괄팀장	200,000원
		팀장	100,000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업무수당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연구수당	총 장	직급별 예산범위 안에서 연봉에 산정하여 반영함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2년 이상)	
		조 교 수 (2년 미만)	
	경력수당		50,000원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의거 지급 (단,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휴일수당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의거 지급 (단,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또는 유급휴가로 대체)	
	시설대여 관리수당	시설대여 관리직원에게 지급 (단, 시설대여료에 관리비 포함인 경우)	100,000원
생활관, 야간 경비 수당	생활관 관리, 야간경비 수당 (단, 학내에 거주하는 경우)	200,000원	

※ 보직수당은 직무대행도 지급함

<별표 7> 삭제(2025.02.24.)

<별표 8> (2018.2.27.개정), (2019.8.21.개정)

경조금 지급표

적 용 범 위		지 급 금 액 범 위
결 혼	본인결혼	200,000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200,000원
출 산	본인 및 배우자	200,000원
사 망	본 인	본봉의 200%
	배우자	본봉의 100%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00,000원
칠순 팔순 구순 상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100,000원
※경조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		

<별표 9>

프로젝트 수행 연구수당

구분		상한액(원)	비고
프로젝트 수행 연구수당 (T/F, 위원회활동, 기타 과제수행 등)	월 8회 이상 회의참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투자 하였으며, 회의록 또는 연구 성과물을 제출한 경우	300,000원/월	1회 시간 기준 : 2시간
	월 4회 이상 회의참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투자 하였으며, 회의록 또는 연구 성과물을 제출한 경우	200,000원/월	
	월 2~3회 회의참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투자 하였으며, 회의록 또는 연구 성과물을 제출한 경우	100,000원/월	

*프로젝트 수행: 상시적, 일반적 위원회는 제외하며, 학교전체 또는 단위부서 차원에서 진행하는 외부기관 사업계획서(보고서)작성,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등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성과물을 창출하는 업무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예산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별표 10> (2018.4.13.개정)

자체진단평가위원회 연구비 지급표

구분	세부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보고서 집필	보고서 집필 1Page 기준	1Page 당 100,000원
보고서 연구보조	보고서 집필 보조 1Page 기준	1Page 당 100,000원
인터뷰	인터뷰 위원 선정 시 일정액	1,000,000원

<별표 11> (2018.9.10.개정)

모니터링 진행 수당 지급표

구분	월 지급액
위원장	300,000원
위원	100,000원

3-5-2 교직원 보수 규정

<별표 12> 삭제(2019.12.12.)

<별표 13> 신설(2019.1.16.)

대학혁신지원TF팀 성과 수당 지급표

구분	팀원
성과 금액	1,000,000원
비고	- 계획보고서 제출 후 성과급 지급